

CLIMATE FINANCE SHADOW REPORT 2023  
2023 기후금융 실태 보고서

1천억 달러 지원 공약 이행평가



# 요약

선진국들은 자국의 엄격하지 않은 회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1천억 달러의 자금 조성 공약을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협상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최악의 영향을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sup>IPCC</sup>의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 1.5°C 이내 제한이라는 파리협정<sup>Paris Agreement</su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sup>1</sup> 동시에 세계는 기후변화의 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듯 해야 할 행동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기 수준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sup>2</sup> 인도, 파키스탄, 중남미, 북미 서부, 영국, 호주, 시베리아 등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이 발생했다.<sup>3</sup> 2022년 파키스탄은 폭염에 이어 6월과 8월 사이에 폭우 및 홍수가 발생해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sup>4</sup>

파키스탄에서는 몬순 기간 중 발생한 홍수로 인해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여성과 여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약 70만 명의 여성들은 임신 중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sup>5</sup> 동아프리카에서는 6년 연속 우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여성들이 부족한 물과 식량을 구하는 일부터 아이와 환자를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생존에 필요한 일을 모두 책임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되고 있다.<sup>6</sup> 두 경우를 비롯해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 여성과 여아는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sup>7</sup>, 남성에 비해 구호물품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생계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은 더 높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안정, 신체적 취약성 및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며, 재난 발생 시 여성과 아동의 사망률은 남성보다 14배 더 높을 수 있다.<sup>8</sup> 또한 여성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기후 행동 계획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 기후행동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sup>9</sup>

국제 기후금융은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상기후 피해에 대처하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저탄소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이면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면 현지 리더십, 포용력,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국제 기후금융<sup>climate finance</sup>은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상기후 피해에 대처하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저탄소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이면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면 현지 리더십, 포용력,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올해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 지구적 이행평가<sup>Global Stock Take</sup>'를 실시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선진국들이 2020년 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금융 목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sup>11</sup> 기후금융 공여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현행 회계 및 보고 기준에 따르면, 2020년 기후금융 재원은 총 833억 달러로 보고되었다.<sup>12</sup> 이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2009년 당시 공약한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며 실제 지원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기준에 근거한 수치이다.

옥스팜은 2020년의 경우 기후행동을 위한 금융 지원의 실제 가치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적은 약 210억~245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뢰를 회복하고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간 1천억 달러 목표를 즉시 달성하고, 목표 미달 연도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문서상의 목표 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후금융의 제공 '방식'이 제공 '금액'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과도한 차관<sup>loan</sup>과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sup>grant</sup> 비중, 불충분한 기후변화 적응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계 기준 등으로 인해 기후금융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기후금융의 극히 일부만이 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지 주도적인 기후행동을 위한 기후금융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지원해야 할 기후금융이 오히려 부채를 늘리거나, 감소 추세에 있는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가 엄연한 현실로 자리 잡으면서 개발도상국들은 피할 수 없는 손실과 피해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지원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sup>COP27</sup>에서는 손실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다소 늦었지만 이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으며, 기금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이 기존의 ODA 및 기후금융 공약 대비 새롭고 부가적인 자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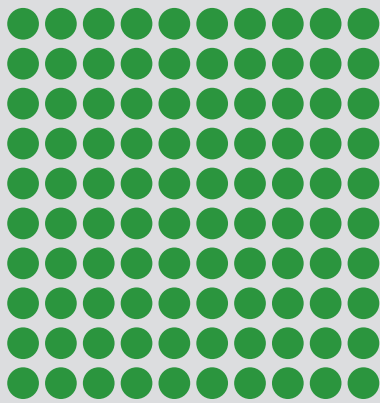
우리는 단기적인 기후변화 협상의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전 지구적 이행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후행동을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행동의 가속화는 기후금융의 조성 및 제공을 가속화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투입되도록 해야만 필요한 규모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운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sup>shipping emissions levy</sup>, 부유세<sup>wealth tax</sup>, 화석연료 과다 사용 이익세<sup>excess fossil-fuel profits tax</sup> 등의 대안을 혁신적인 재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특별인출권<sup>Special Drawing Rights</sup>을 추가로 발행해 개발도상국에 이전하여 기후행동을 지원하고,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투자 자금을 저렴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자금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sup>13</sup>

유엔기후변화협약<sup>UNFCCC</sup>에 따라 2025년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가 반영된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기후금융 목표<sup>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sup>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sup>14</sup> 이러한 논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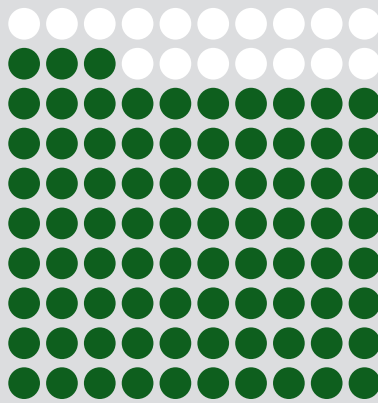
새로운 기후금융 목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실수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기후금융 제공은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약속을 바탕으로 훨씬 더 투명해져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공공재원 조성 목표가 NCQG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재원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역사회에, 특히 기후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생명줄과 같으며 이러한 사실이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은 현지 리더십을 허용하고 지원 대상 지역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필요 기반<sup>needs-based</sup> 목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다자간 프로세스에서의 신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없다. 본 보고서는 신뢰의 재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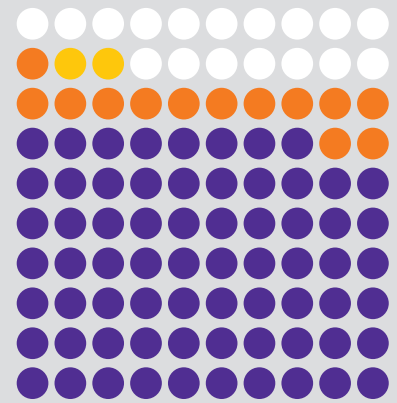
그림 1: 1천억 달러 기후금융 목표 이행 현황(2020년 기준) 및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공공 기후금융 필요 규모<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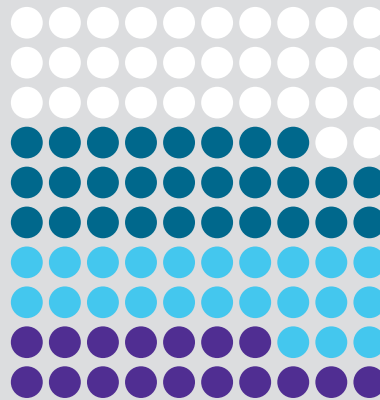
공약 금액



보고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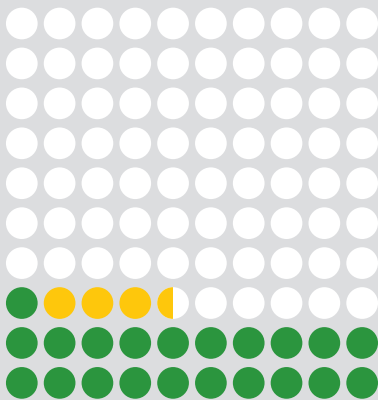


● 수출신용  
● 민간재원  
● 공공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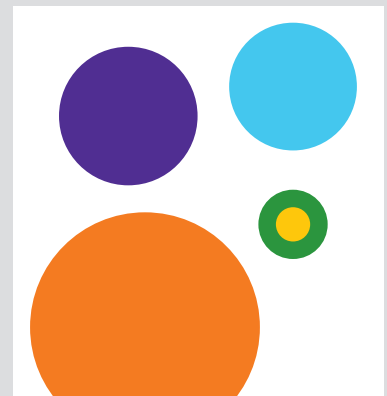
공공재원

- 비양허성 차관
- 양허성 차관
- 증여



실질 가치

- 최소 추정
- 최대 추정



2030년까지 연간 개발도상국 공공재원 필요 규모

- 공약 금액
- 실질 가치
- 기후변화 적응
- 손실과 피해
- 기후변화 완화

# 2019~2020년 기후금융 관련 주요 내용

1. 선진국들은 연간 1천억 달러의 기후금융 공약 금액 중 833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10억~245억 달러만이 실질적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개발도상국에 제공된 것으로 보고된 기후금융의 순 금전적 가치(증여 환산액)는 선진국들이 보고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3. 보고된 자금의 기후 관련성이 과다 추정되었기 때문에 양자 간 기후금융 규모는 보고된 수치보다 최대 30% 적은 금액이었을 수 있다.
4. 보고된 공공 기후금융의 1/4만이 증여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차관이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심지어 양허성 차관도 아니었다(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이 아님).
5. 보고된 공공 기후금융 중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금은 33%에 불과했으며, 59%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자금이었다.
6. 최빈국<sup>LDC</sup>과 군소도서개발국<sup>SID</sup>에 할당된 기후금융 중 각각 절반 이상 및 1/3 이상이 차관으로 제공되었다.
7. 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한 자금은 여전히 국제 기후금융 구조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8. 기후 관련 개발금융은 '새롭고 부가적인' 자금으로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정체 상태에 있는 ODA 예산의 최대 1/3을 차지하고 있다.
9. 기후 관련 개발금융 중 약 2.9%만이 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지에서 지출된 자금의 규모에 관한 자료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10. 연간 1천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성된 민간재원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일관되고 투명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11. 필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연간 1천억 달러 목표보다 설계 및 규모 면에서 더 향상된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제언 사항

## 보고의 투명성 제고

기후금융에 대한 보고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진정한 가치와 선진국의 실제 노력이 효과적으로 반영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기후금융 공여국(양자 및 다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 정보가 더 많이 포함된 전체 프로젝트 목록을 보고한다.
- 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고, 이러한 자금의 부가성<sup>additionality</sup>, 목적 및 지원 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한다.
- 선진국들이 양자 간 ODA 보고 시 적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공통 양식에 기후금융 가치의 증여 환산액을 기재하여 보고한다.
- 기후변화가 광범위한 개발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인 경우, 프로젝트별 접근법을 사용하여 전체 프로젝트 가치와 기후변화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추정 가치를 보고한다.
- 비양허성 수단을 UNFCCC 기후금융 의무에 포함시키는 관행을 중단한다.
- 기후금융 제공을 위해 사용된 차관 및 기타 수단의 조건(이자율 및 상환액 포함)을 공개한다.
- LDC와 SIDS에 제공되는 기후금융의 비중을 보고한다.
- 조성된 민간재원을 공공재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별로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투자와 조성된 자금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자금 조성 실적의 귀속 시 정부 간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등 카토비체 원칙<sup>Katowice Principles</sup>을 적용한다.

## 연간 1천억 달러 목표 달성

기후금융 제공 국가들은 연간 1천억 달러 목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증여 기반 지원을 시급히 확대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 선진국들은 2020~2025년 기간 중 목표 미달 연도에 대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여금 증액을 통해 부족분을 해결할 것인지 약속해야 한다.
- 모든 기후금융 제공 국가는 증여 기반 금융에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 적응 금융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선진국은 2025년까지 적응 금융을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개별적 조치가 기술된 이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 모든 기후금융 제공 국가는 일체의 적응 금융을 증여 형식으로 즉시 제공하는 등 LDC와 SIDS에 대한 기후금융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 현지 주도적이고 젠더 변혁적인 솔루션

- 기후금융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계획, 정책 및 전략(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포함)에 맞추어 현지 차원의 기후행동을 위한 자금과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현지 주도적 기후변화 적응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 지출된 기후금융의 규모를 추적 및 보고해야 한다.

- 기후금융 공여국들은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서 성평등을 우선시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목표, 설계, 예산, 실행 등에 있어서 남녀의 고유한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성평등지표(gender equality marker)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OECD와 UNFCCC에 보고해야 한다.

## 새로운 기후 금융 목표

2025년 이후 새로운 글로벌 기후금융 목표(이하 “NCQG”)는 증여, 차관, 민간투자 등 다양한 항목들을 하나로 포괄한 ‘어림수’로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NCQG는 보다 잘 정의되어야 하며, 연간 1천억 달러 목표보다 실제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보고된 수치와 제공된 지원의 순가치 사이의 극명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 목표에 관한 협상에서 무엇을 기후금융으로 간주할 것인지, 새로운 목표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새로운 목표는 필요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새로운 증거와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해야 한다. 재정적 필요 평가에 따르면 연간 1천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새로운 목표는 현저하게 상향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 새로운 목표에는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손실 및 피해 해결을 위해 투자수익이 요구되지 않는 증여 기반 공공재원의 필요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NCQG는 공공 기후금융과 조성된 민간재원을 하나의 목표(또는 하위 목표)로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
- 새로운 목표에는 기후변화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 해결을 위한 하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NCQG는 LDC, SIDS, 그 밖에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역을 증여 기반 금융 및 양허성 수준이 높은 금융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등 이들 국가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신규 자원 등을 통해 조달되는 새롭고 부가적인 자금

-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운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 부유세 또는 화석연료 과다 사용 이익세와 같은 대안을 혁신적인 재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 새로운 필요 기반 금융 목표를 위해 충분한 재원을 조성하려면 선진국들이 책임을 인식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이 특별인출권을 추가로 발행해 개발도상국에 이전하여 기후행동을 지원하고,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투자 자금을 저렴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기후금융은 원조 공약에 부가적인 것이어야 한다. 연간 1천억 달러 목표 및 UNFCCC 의무에 포함되는 자금은 0.7% ODA/GNI 목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첫 단계로 선진국들은 ODA로 인정되는 기후금융의 향후 증액분이 기후금융과 최소한 같은 비율로 증액되는 전체 원조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속해야 한다.
- 공여국들은 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한 자금을 증여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현행 연간 1천억 달러 목표에 부가적인 것이어야 한다.

# ENDNOTES

- 1 H. Ritchie and M. Roser. (2022). Greenhouse Gas Emissions. Our World in Data. Accessed 26 April 2023. <https://ourworldindata.org/greenhouse-gas-emissions>
- 2 World Weather Attribution. (27 April 2023). *Human-induced climate change increased drought severity in Horn of Africa*. Accessed 2 May 2023. <https://www.worldweatherattribution.org/human-induced-climate-change-increased-drought-severity-in-southern-horn-of-africa/>
- 3 World Weather Attribution. Various press releases. Accessed 2 May 2023. <https://www.worldweatherattribution.org/analysis/heatwave/>
- 4 World Weather Attribution. (14 September 2022). *Climate change likely increased extreme monsoon rainfall, flooding highly vulnerable communities in Pakistan*. Press release. Accessed 26 April 2023. <https://www.worldweatherattribution.org/climate-change-likely-increased-extreme-monsoon-rainfall-flooding-highly-vulnerable-communities-in-pakistan/>
- 5 UNFPA. (2022). *Women and girls bearing the brunt of the Pakistan Monsoon floods*. Press release. Accessed 12 May 2023. <https://reliefweb.int/report/pakistan/women-and-girls-bearing-brunt-pakistan-monsoon-floods>
- 6 L. Molesky. (2022). *Gender roles in the East African drought*. Accessed 12 May 2023. <https://www.mironline.ca/gender-roles-in-the-east-african-drought>
- 7 M. Bachelet. (2022). Remarks to Panel: ‘Exploring the nexus between climate change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through a human rights lens.’ <https://www.ohchr.org/en/statements/2022/06/annual-full-day-discussion-human-rights-women>
- 8 S.R. Fatema, et al. (2019). ‘Women’s health-related vulnerabilities in natural disasters: a systematic review protocol’. *BMJ Open*.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937021>
- 9 L. Schalatek. (2022). *Climate Finance Fundamentals 10: Gender and Climate Finance*. Accessed 12 May 2023. <https://us.boell.org/en/2022/03/04/climate-finance-fundamentals-10-gender-and-climate-finance>
- 10 옥스팜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지만, UNFCCC와 파리협정에서 이러한 국가 분류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금융 제공을 포함한 국제기후체제의 측면을 언급할 경우 명확성을 위해 해당 용어들을 사용한다.
- 11 해당 공약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서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1년 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COP16에서 확정되었다. 참조: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2010).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Fifteenth Session, Held in Copenhagen from 7 to 19 December 2009.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ifteenth Session*. Accessed 26 April 2023.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docs/2009/cop15/eng/11a01.pdf>; and UNFCCC. (2011).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ixteenth Session, Held in Cancun from 29 November to 10 December 2010.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Sixteenth Session*. Accessed 26 April 2023. <https://unfccc.int/resource/docs/2010/cop16/eng/07a01.pdf>
- 12 OECD. (2022).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6-2020: Insights from Disaggregated Analysis*. <https://doi.org/10.1787/286dae5d-en>. Throughout the report we use \$ to refer to US dollars.
- 13 E. Seery and D. Jacobs. (2023). *False Economy: Financial wizardry won't pay the bill for a fair and sustainable future*. Oxfam. <https://www.oxfam.org/en/research/false-economy-financial-wizardry-wont-pay-bill-fair-and-sustainable-future>
- 14 UNFCCC. (2021). *Decision 9/CMA.3,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Accessed 26 April 2023. <https://unfccc.int/documents/460952>
- 15 그림(좌측에서 우측으로) 1a~1e에 표시된 작은 원은 각각 미화 10억 달러를 나타낸다. 그림 1f의 원들은 상대적 규모에 따라 대략 비례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설명: 그림 1a – 연간 1천억 달러 공약. 그림 1b – 보고 금액: OECD(2022a). 그림 1c – 경로: OECD(2022a). 그림 1d – 수단: 보고된 양자간 기후금융(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UNFCCC(2023)에 근거함. 전체 보고서의 각주 17 참조). 보고된 다자간 기후금융(OECD(2022b)에 근거함). 그림 1e – 옥스팜이 OECD(2022b)에 근거하여 산정한 기후 특정적 순지원(Climate-Specific Net Assistance) 추정치. 그림 1f – 표 9에 언급된 출처에 근거한 2030년까지의 개발도상국 공공재원 필요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기후변화 완화 금융의 경우, IPCC가 제시한 2030년 범위의 중간 수준에서 50%(1조 1천억 달러)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50%는 민간재원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적응 금융의 경우, UNEP가 제시한 2030년 범위의 상단(3,400억 달러)을 적용했다. 손실과 피해 금융의 경우, 표 9에 언급된 3개의 출처 중 중간 수준(4,000억 달러)을 적용했다.



© Oxfam International June 2023

기후금융 분야의 독립적인 연구 컨설팅 회사인 INKA Consult는 본 보고서의 바탕이 된 기술적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OECD 직원분들의 기술적 지원 및 조언과 이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Bertram Zagema, Jan Kowalzig, Lyndsay Walsh (Oxfam), Andrew Hattle, Christopher Roy, Hans Peter Dejgaard (이상 INKA Consult)

OECD 직원분들: Raphaël Jachnik and Chiara Falduto (이상 Environment Directorate), Cécile Sangaré, Tomas Hos, Giorgio Gualberti (이상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도움을 주신분들: Helen Bunting, Nafkote Dabi, Pdraig Oliver, Romain Weikmans, Timmons Roberts, Pieter Pauw, Joe Thwaites, Tracy Carty, Meena Raman, Tess Woolfenden, Scott Sellwood, Jason Farr, Didier Jacobs, Emma Seery, Dana Stefov, Amita Pitre, Guillaume Compain, Norman Martín Casas, Alba Pérez Terán, Melissa Bungcaras, Kesaia Vasutoga.

본 보고서는 개발 및 인도주의 정책 문제에 대한 공적 토론을 위해 작성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dvocacy@oxfaminternational.org](mailto:advocacy@oxfaminternational.org)

본 보고서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단, 옹호활동, 캠페인, 교육,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원본의 출처를 밝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의 목적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외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복사하거나, 타 출판물 내에 재사용, 또는 번역 및 각색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policyandpractice@oxfam.org.uk](mailto:policyandpractice@oxfam.org.uk)

본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는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Published by Oxfam GB for Oxfam International in June 2023.

DOI: 10.21201/2023.621500

Oxfam GB, Oxfam House, John Smith Drive, Cowley, Oxford, OX4 2JY, UK.

**옥스팜**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이끄는 글로벌 운동의 일환으로, 90여 개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결된 21개 조직의 국제적인 연합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xfam.org](http://www.oxfam.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Oxfam America ([www.oxfamamerica.org](http://www.oxfamamerica.org))

Oxfam Aotearoa ([www.oxfam.org.nz](http://www.oxfam.org.nz))

Oxfam Australia ([www.oxfam.org.au](http://www.oxfam.org.au))

Oxfam-in-Belgium ([www.oxfamsol.be](http://www.oxfamsol.be))

Oxfam Brasil ([www.oxfam.org.br](http://www.oxfam.org.br))

Oxfam Canada ([www.oxfam.ca](http://www.oxfam.ca))

Oxfam Colombia ([www.oxfamcolombia.org](http://www.oxfamcolombia.org))

Oxfam France ([www.oxfamfrance.org](http://www.oxfamfrance.org))

Oxfam Germany ([www.oxfam.de](http://www.oxfam.de))

Oxfam GB ([www.oxfam.org.uk](http://www.oxfam.org.uk))

Oxfam Hong Kong ([www.oxfam.org.hk](http://www.oxfam.org.hk))

Oxfam IBIS (Denmark) ([www.oxfamibis.dk](http://www.oxfamibis.dk))

Oxfam India ([www.oxfamindia.org](http://www.oxfamindia.org))

Oxfam Intermón (Spain) ([www.oxfamintermon.org](http://www.oxfamintermon.org))

Oxfam Ireland ([www.oxfamireland.org](http://www.oxfamireland.org))

Oxfam Italy ([www.oxfamitalia.org](http://www.oxfamitalia.org))

Oxfam Mexico ([www.oxfammexico.org](http://www.oxfammexico.org))

Oxfam Novib (Netherlands) ([www.oxfamnovib.nl](http://www.oxfamnovib.nl))

Oxfam Québec ([www.oxfam.qc.ca](http://www.oxfam.qc.ca))

Oxfam South Africa ([www.oxfam.org.za](http://www.oxfam.org.za))

KEDV ([www.kedv.org.tr](http://www.kedv.org.tr))

[www.oxfam.org](http://www.oxfam.org)



**OXFAM**  
옥스팜